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025 사회서비스 기관 중심 맞춤형 전문 교육〉 지원단체 추가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기관 중심 맞춤형 전문 교육 지원단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사회서비스 기관 중심 맞춤형 전문 교육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지원내용 : 단체별 맞춤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2

모집개요

- 추가모집 규모 : 2개 단체
- 지원 예산 범위 : 단체별 910,000원(금구십일만원) 이내 강사료, 대관료
- 교육 추진 일정 : 2025. 10월 이내 지원 범위 내 교육 운영 완료
-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서비스 분야 직능단체 및 협회
 - 법인격을 갖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협의체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연합체 또는 협회
- 우대사항
 -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수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
 - 교육 운영 경험 및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한 단체
 - 지역별 균형적 교육 제공이 가능한 단체

3

지원내용

○ 교육 지원 범위

- 단체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 단체별 전문 강사진 섭외에 따른 교육 운영비 지원
- 단체별 교육 장소 필요에 따른 교육장 대관료 지원

○ 교육 운영 방식

-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
- 기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붙임]사회서비스 기관 중심 맞춤형 전문 교육 계획서 1부
- 단체 현황 및 소개 약식 자료 1부

○ 제출기한 : 공고일 이후 2025년 8월 29일(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 ✉ 이메일 제출 jbpas_tf@naver.com

5

선정방법

구분	세부 내용	결과
내부심사	■ 점수(100점) - 기준 : 교육 필요성 및 시급성(30점) - 교육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5점) - 단체의 역량 및 추진체계(20점) - 교육 대상자 규모 및 파급효과(15점) - 지역 균형성 및 접근성(10점)	고득점순 선정 (2개 단체)
선정발표	■ 2025. 9. 4.(수) 예정	

○ 유의사항

- 강사수당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합니다.
- 신청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단체는 향후 교육 운영 관련 각종 지출 증빙 서류 및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품질혁신팀 ☎ 063-906-4054]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분	지급대상		기준단가(시간)	
	일반	공직자 등	기본	초과
특1	- 전직 장관급 -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직 국회의원 - 전직 대학총장 - 대기업 회장 - 인간문화재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 경력자	- 장관급* - 광역자치단체장* - 국회의원* - 대학총장(장관급)	400	300 (200*)
			시간보상 300	
특2	- 전직 차관(급)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전직 공기업 대표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 경력자	- 차관급, 1급 공무원 - 기초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차관급) - 공직유관단체장(중앙)	300	200
			시간보상 200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광역) - 전직 대학교수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및 중역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감정평가사·의사·기술사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컨설턴트(석사학위 이상)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및 위와 동등 이상 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 5급 공무원(박사 학위) - 지방의회의원(광역) - 대학교수 - 공직유관단체장(지방) 및 임원* * 출연 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250	120
			시간보상 120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기초) - 기업·기관·단체 부장급 - 특·1급 외의 강사	- 5급 이하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기초) - 대학 강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150	80
			시간보상 80	
3급	- 정보화 교육 강사 - 취미·소양 강사		130	70
			시간보상 50	
보조 강사	- 주강사의 강의나 교육진행을 보조하는 외부 인사 (학생, 청소년 포함) ※ 실기·실습·시연 등의 보조강사		60	30
			시간보상 30	
별도 강사	-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0천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	

※ 시간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1일 1회 해당권역(2권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해 별도 결제를 득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 별지별표 외 사항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준용